

연구 자료

미국의 유통지원 용자제도 고찰

박 동 규*

1. 서론
2. 미국의 유통지원 용자제도
3.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 서론

우리 나라의 추곡 수매제도는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적합한 보다 효율적인 제도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수확기 이후에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하던 추곡 수매제도가 1997년부터는 약정수매제도로 바뀌었다. 정부는 영농기 이전에 개별 농가와 수매가격과 수매량에 대해 약정하고 농가는 정부로부터 약정액(수매가격×수매량)의 일부를 선도금으로 지급받고 수확기에 차액을 받는 것이 약정수매제도이다. 이 제도는 농가에 저리의 영농자금 지원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UR 협상결과 정부의 추곡수매액이 매년 감소하기 때문에 수매가격이 인상되면 수매량이 줄어

들게 되고 품질에 관계없이 수매하는 쌀에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질미 생산을 유도하지 못하는 등 과거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유사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또한 수매가격이 파종기 이전에 예시되기 때문에 농가로 하여금 영농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수급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1998년에는 작황이 부진하여 시중가격이 수매가격을 상회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추곡수매 약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¹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쌀 시장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² 시장기능 지향적인 입찰매입방식, 용자

¹ 약정 이행률이 84% 정도로 추곡수매제도 시행 이후 농민의 참여율이 제일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² 쌀의 경우 관세화에 의한 수입개방을 유예한 대신 최소시장접근방식에 따라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1988-90년 기간동안 연평균 소비량의 일정비율을 수입하기로 하였고 2004년 이후의 쌀수입 방식에 관해서는 의무수입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재협상을하기로 하였다. 최소시장접근 방식으로 쌀을 수입하던 일본은 최근 관세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선

수매방식 등이 논의된 결과 1999년도에는 용자수매제도가 특정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정환 등(1997)이 구상한 용자수매제도 개요는 다음과 같다. 농가는 벼 매입이 가능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 등 시장 참여자들과 용자금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다. 용자수매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협이나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 등은 정부에 담보 설정을 하고 채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며 용자금 재원은 정부가 지원한다. 수확 직후에 농가는 쌀을 담보하고 용자금을 지급 받는데 용자금은 예상 시가에 일정 비율을 곱한 용자가격에 담보물량을 곱한 액수가 된다. 각 시장 참여자는 위탁받은 쌀의 판매가 완료된 후 평균 판매가격으로 농가에 정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비축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장부상으로 인수하며 유통업체들이 농가에 정산하는 평균가격으로 사후 정산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³ 전반적으로 수매제도는 가격지지를 통한 소득정책에서 유통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범실시가 예정된 용자수매제도하에서는 쌀 가격 결정에 정부 개입이 배제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인 측면이 있으나 해결되어야 될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 먼저 농가가 판매를 위탁한 쌀의 판매가격과 시기를 유통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판매대금을 정산할 때 농가와 유통업체간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농가와 유통업체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정산 방식은 어떤 것일까? 용자금을 결정할 때 품질이나 등급에 관계없이 일

연하였다.

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또는 어떤 수준이 적정한지도 관심사항이 될 수 있다. 또한 시장가격이 용자금 수준보다 낮게 형성된다면 원리금 상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산할 때 용자금과 위탁한 물량과 관련된 각종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지? 등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3년부터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가격지지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1996년 농업법에서는 목표가격에 의한 부족분 지불(Deficiency Payment) 제도와 가격정책을 폐지하고 과거의 경작면적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약보상(Contract Payment)하는 소득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선택적 상환 유통지원 용자(Nonrecourse Marketing Assistance Loan)⁴ 제도를 통한 유통정책은 확대·지속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비상환 유통지원 용자제도 시행에 있어서 용자가격과 상환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용자시기와 상환시기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며, 정산의 기초가 되는 시장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며, 동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용자수매제도 시행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³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곡물의 중장기 수급 전망과 대응정책」 pp. 408-410 참조.

⁴ 이 용어는 흔히 유통용자(Marketing Loans)라고 사용되는데 공식 용어는 유통지원용자(Nonrecourse Marketing Assistance Loans)이다. 생산자가 용자금을 상환할 때 현금이나 현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 상환으로 표현하였다. 과거에는 '비상환 용자'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보다 분명한 의미 전달을 위해 '비상환'보다는 '선택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 미국의 유통지원 용자 (Nonrecourse Marketing Assistance Loans)제도

2.1. 제도의 개요

「1996 농업법(Reform Act of 1996)」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밀, 옥수수 등 16개 농산물에 대해 선택적 상환 유통지원 용자와 용자부족분 지불(Loan Deficiency Payment) 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무부의 각 카운티(County) 단위 지방사무소(Farm Service Agency)는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를 대신하여 생산자들이 창고업자들에게 담보한 밀,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콩, 채종류, 쌀, 면화 등에 용자금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내에 생산자들의 선택에 의해 용자금을 상환하거나 현물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산자는 용자금 상환 만기가 도래할 때에 시장가격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용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담보권을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농산물 시장가격이 용자가격보다 낮을 경우에 생산자들은 시장가격과 용자가격 차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 용자부족분 지불제도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통지원 용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생산자는 유통지원 용자나 용자부족분지불 중 선택적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용자 부족분 지불제도로 인해 연방정부의 곡물 재고량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납세자들의 창고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국제시장에서 미국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켜 주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유통지원 용자제도의 기본목적은 생산자에게 생산과 판매시점 사이의 자금요를 완화시켜줌으로써 생산자들은 가격이 가장 낮은 수확기에 농산물을 팔지 않고 적정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다. 1998년도의 경우 16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약 42억 달러가 용자되었다.

유통지원 용자제도의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해당 농산물은 상품신용공사가 규정한 최소한의 등급과 질(Quality)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생산자유통계약을 맺고 보상금을 받고 있는 품목(밀, 사료곡물, 담작면화, 쌀)의 경우 과거 경작면적 이외의 면적에서 생산되는 물량도 용자 대상이 된다. 장립형 면화와 채종류 등 생산자유통계약을 맺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도 용자금의 혜택이 있으나 장립형 면화는 용자부족분 지불제도 혜택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유통지원 용자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농지보전 및 습지보호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2.2. 용자가격

유통지원 용자가격(Marketing Assistance Loan Rates: 이하 용자가격이라 함)은 품목별로 의회에서 결정된 최고·최저 용자가격 범위 내에서 매년 전국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생산지와 시장간 수송비 등을 반영하여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각 품목별 2002년까지의 용자가격은 1995년도 수준을

상회하지 못하며 품목별 용자가격 결정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

밀과 옥수수에 대한 용자가격은 과거 시장 가격과 현재의 재고량에 대한 소비량의 비율이 연계되어 결정된다. 밀의 전국적인 용자가격 수준은 과거 5년 동안의 평균 생산자 수취가격의 85%⁵와 브셀당 2.58달러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농무장관은 밀에 대한 용자가격을 재고율이 30% 이상일 경우 85% 공식에 의해 결정된 것보다 10% 정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추정 재고율이 15~30% 정도이면 용자가격은 5%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나 재고율이 15% 이하이면 용자가격은 85% 공식에서 산출된 수준이 된다. 옥수수의 용자가격은 기본적으로 85% 공식에 의해 결정되고 브셀당 1.89달러를 넘지 못한다. 농무장관은 옥수수 재고율이 25% 이상이면 용자수준을 85% 공식에 의한 것보다 10% 정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재고율이 12.5~25% 수준이면 85% 공식에 의한 용자수준의 5% 이내에서 조정되며 재고율이 12.5% 이내이면 용자수준은 조정되지 않는다.

귀리, 보리, 수수 등 사료곡물에 대한 용자가격은 옥수수 가격과 연계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사료곡물 가격은 상대적인 사료곡물 가격 및 타용도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용자가격은 지난 5년 동안의 옥수수에 대한 사료곡물의 상대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1996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쌀 용자가격은 1995년도 수준인 100 파운드 당 \$6.50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장립종, 중립종, 단립종별

⁵ 이는 85% 공식이라 불리우며, 과거 5년 가격 중 최고·최저가격을 제외한 3년 동안의 평균 가격을 사용한다.

로 용자가격에 다소 차등이 있다. 면화(Upland cotton)의 용자가격은 85% 공식에 의하거나 국제가격을 참고하여 결정되는데 파운드 당 \$0.50과 \$0.5192 이내에서 변동한다. 콩 용자가격은 기본적으로 85% 공식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최저수준 \$4.92와 최고수준 \$5.26 사이에서 결정된다.

또한 용자가격은 품목별로 확일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해당 농산물의 등급이나 질을 고려하여 기준가격에서 할증(Premium)하거나 할인(Discount)하여 결정되고 있다.

2.3. 이자율

상품신용공사가 농가에 적용하는 용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상품신용공사가 재무부로부터 용자받는 시점에서의 이자율에 1% 포인트를 추가한 수준이다. 일단 유통용자가 이루어지면 이자율은 고정되지만, 1월 1일까지 상환하지 않은 용자금에 대해서는 상품신용공사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자율이 1% 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1996 농업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이자율은 상품신용공사가 재무부로부터 차입하는 이자율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2.4. 용자금과 용자부족분 신청 및 용자금 상환 시기

유통지원 용자금이나 용자부족분 지불신청 시기 및 용자금 상환시기는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밀, 보리, 귀리, 카놀라(Canola), 평지씨(Rapeseed), 그리고 아마인(Flaxseed)의 경우 유통지원 용자금 최종 신청 가능시기는 수확이 완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 31일이다.

다른 작물도 수확이 완료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는 유통지원 용자금과 용자부족분에 대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밀, 사료곡물, 쌀과 채종류에 대한 용자금 상환 만기는 용자가 이루어진 다음 달부터 9 번째 달의 마지막 날이다. 반면 답작 및 장립형 면화(Extra Long Staple Cotton)에 대한 용자금의 상환 만기는 용자가 이루어진 달부터 10개월이다. 면화에 대한 상환시기가 다른 작물에 비해 약간 늦지만 모든 작물에 대한 용자기간은 일정하다.

농무장관도 명시적으로 상환시기를 연장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을 정도로 용자금의 상환시기는 경직적이다. 생산자는 용자금을 받은 날부터 상환만기 이전에 언제든지 용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용자를 얻기 위해 담보로 맡긴 물량은 상환만기 이전에 현금 대신에 상품신용공사에 이전할 수 없다.

2.5. 용자금 상환가격

용자금에 대해 농가가 상환해야 할 가격은 용자금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액이며 답작면화의 경우에는 용자기간 동안의 저장비용도 포함된다. 상환가격의 각 구성을 살펴보면 상품 단위당 원금은 상품신용공사가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용자금이다. 실제적으로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용자금은 품질이나 등급에 따라 일정한 할증률이나 할인률로 조정되기 때문에 동일 품목이라도 지역별, 품질별로 차이가 있다. 이자부담은 상환이 이루어지는 날짜의 단위당 액수이다.

농가가 실제로 상환하는 가격은 용자금에 이자를 합한 액수(답작면화의 경우 저장비용도 포함)와 상품신용공사가 발표하는 시장가격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각 카운티별로 고시하는 시장가격은 수출가격이나 국제가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밀, 옥수수,

표 1 상품별 용자가가격과 시장가격 결정 방식

상 품 별	용 자 가 격			시 장 가 격				
	빈도	위치	기타	빈도	시간	유효시간	방식	기타
밀	연간	카운티별로 변함	-	매일	오전 7시	1일	PCP	등급별 차이
옥수수, 수수	"	"	-	"	"	"	"	"
보리, 귀리	"	"	-	"	"	"	"	"
콩	"	"	-	"	"	"	"	"
채종류	"	"	-	매주(금)	"	1주일	"	"
쌀	"	모든 카운티 동일	타입별 차이	매주(화)	오후 3시	1주일	AWP	타입별 차이
답작 면화	"	참고 위치별로 차이	"	매주(목)	오후 5시	1주일	AWP	참고 위치별로 차이

주: 1) PCP 방식은 항만 가격을 이용하여 역으로 해당지역의 상품가격을 구하는 것임.

2) AWP는 국제시장 가격을 이용하여 해당지역 농산물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임.

수수, 보리, 귀리, 콩의 경우 항만가격을 기초로 각 품목별 해당지역의 농산물 가격을 매일 고시하고 있다. 반면 채종류, 쌀과 답작 면화의 시장가격은 일주일에 한번 정해지고 그 가격은 일주일 동안 유효하다. 채종류 가격은 항만의 수출가격을 기초로 해당지역의 가격이 고시되는 반면 쌀과 답작면화의 시장가격은 국제 시장가격이 인용된다. 쌀 가격은 타 입별로 차이가 있고 면화가격을 결정하는 데에는 창고료가 고려되기 때문에 창고 위치별로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차이가 발생한다. 그 외의 품목의 경우 시장가격은 등급별로 차이가 있다(표 1).

예를들어 미국 미조리주 모니투(Moniteau)라는 카운티에서의 특정 날짜의 콩 시장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특정 날짜의 곡물 수출항인 걸프만에서 거래되는 콩 가격이 브셀당 2.09달러이고 같은 날 캔사스시티 곡물 시장에서 형성된 콩 가격이 1.71달러라고 가정한다. 모니투라 카운티에서 걸프만까지의 수송비를 브셀당 44센트, 캔사스시티까지의 수송비는 20 센트라고 가정하면 모니투 카운티 지역의 콩 시장가격은 형성된 수출가격에서 수송비를 제외한 가격 중 상대적으로 높은 1달러 65센트로 고시된다.⁶

융자금 상환 규정에 의해 상환이 면제되는 이자나 원금의 일부가 있는데 이는 시장용자

이익(Marketing Loan Gain)이라 불리운다. 시장용자 이익은 흔히 용자가격과 상환하는 시장가격과의 차이이다. 모니투 카운티에서의 콩 용자가격이 브셀당 \$1.89라면 시장가격과의 차액인 24센트가 시장용자 이익이 된다. 이러한 융자금 상환 예외규정은 융자금 상환 만기까지의 선택적 상환용자액에 적용되며 상환만기를 넘긴 융자금에 대해서는 시장용자 이익 혜택이 없다.

2.6. 융자부족분 지불(Loan Deficiency Payment)

융자부족분 지불제도는 1985 농업법에 쌀과 면화에 적용하던 제도였으나 1996년도 부터는 15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생산자로 하여금 담보 농산물을 상품 신용공사에 이전하는 것보다는 용자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라도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고부담이 경감되고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는 수출 진흥의 효과도 얻고 있다.

융자부족분은 특정 지역에서의 상품신용공사가 고시하는 시장가격이 용자가격 보다 낮을때 시장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가는 시장가격과 용자가격과의 차이를 신청하여 받는다. 융자부족분 지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유통지원 융자제도 대상이 되는 모든 생산자로 이들은 유통용자나 융자부족분 지불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 상환과는 달리 융자부족분 수준을 결정할 때에는 품질에 따른 할증이나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는다. 단, 장립형 면화에 대해 융자부족분 지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⁶ 상품신용공사는 두 가지 수출가격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인 브셀당 \$1.65를 해당 지역의 시장가격으로 고시한다.

	곡물시장	
	걸프만	캔사스시티
수출가격(달러/브셀) (A)	2.09	1.71
수송비(달러/브셀) (B)	0.44	0.20
시장가격(A - B)	1.65	1.51

표 2 연도별, 품목별 용자부족분 지불 규모

연 도	품 목	단 위	해당 군(County) 수	물 량	액 수(\$)
1995	쌀	100파운드	26	24,270.10	728.11
1996	n.a.				
1997	밀	브셸	19	95,483.16	23,817.33
	옥수수	브셸	1	3,283.16	984.95
	보리	브셸	25	62,876.98	6,480.25
	귀리	브셸	2	12,774.00	2,641.26
	콩	브셸	2	1,421.20	643.27
	면화	베일(Bales)	2,134	240,633.00	2,201,341.70
1998	밀	브셸	307,807	1,326,550,747.14	393,130,948.41
	옥수수	브셸	359,991	2,835,704,795.41	580,806,417.92
	보리	브셸	43,320	234,192,720.38	71,803,153.01
	귀리	브셸	29,839	82,402,073.22	15,264,879.10
	아마인	파운드	2,952	2,788,716.57	1,560,957.65
	콩	브셸	387,406	1,140,786,251.34	445,523,220.83
	수수	파운드	52,712	118,394,859.89	39,992,024.21
	면화	베일	34,978	2,986,387.00	112,133,565.69
	해바라기씨	파운드	12,697	22,884,411.62	7,595,717.15
	카놀라	파운드	6,506	10,850,279.44	6,974,285.80
	해바라기씨류	파운드	2	3,408.78	374.97

주: 1998년 수치는 12월 18일까지의 실적치임.

생산자들이 유통용자제도로부터 얻는 총 혜택은 제한되어 있다. 유통용자이익(Market-loan gain)이나 용자부족분 지불로부터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수혜액은 연간 7만 5천 달러로 한정되어 있다.

1998년도에 아시아 곡물 수입국들의 수입 수요가 감소하여 국제곡물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용자부족분 지불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도에는 6개 품목에 대해 약 2백만 달러가 지출되었으나 1998년도에는 11개 품목에 약 16.8억 달러가 지출되었다. 1998년도의 국제시장에서의 쌀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11%나 상승하여 용자부족분이 지출되지 않았으나 밀, 옥수수, 대두 가격은 각각 전년도

에 비해 22%, 19%, 24%씩 하락하여 용자부족분 지불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용자부족분 지불 제도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에도 일정수준의 농가 소득이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농산물 가격은 시장기능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3. 시사점 및 향후 과제

미국에서는 생산자들이 카운티별로 고시하고 있는 시장가격과 용자가격을 감안하여 자신들이 담보한 농산물의 판매시기를 선택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농민들이 수확한 쌀을 미곡종합처리장에 입고한 후 예상 판매금액

의 일정액을 선금으로 받고 판매를 위탁한다. 미국종합처리장에서는 판매가 완료된 후 총 판매액에서 일정 비용을 공제한 후 농가별로 사후 정산한다. 반면 우리 나라의 미국종합처리장은 위탁판매보다는 매취 사업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는 유통업체들이 판매한 쌀 가격에 대한 농가의 불신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⁷ 우리 나라가 용자수매제도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정산방식을 채택하면 유통업체들은 판매사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본의 평균 판매가격에 의한 정산방식을 채택하고 생산자들이 수용 가능한 가격이 제시되지 않는 한 농가와 유통업체간 마찰이 예상된다. 그리고 쌀 가격을 정산할 때 각 농가별로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쌀 시장 개방화 가능성에 대비한 미질 향상 제고 방향과도 상반된다. 따라서 등급별, 미질별로 쌀 가격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쌀 가격을 정산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정산의 기초가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 도매시장이 활성화되거나 새로운 미국거래소 등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미질을 고려한 쌀의 등급화 기준을 설정하여 소비자 선호도가 없거나 매우 낮은 쌀은 용자수매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질을 유지하는 쌀이 생산되도록 유도하여 개방화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질, 등급을 고려하여 용

자금도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용자금이 유통지원 뿐만 아니라 가격지지의 기능을 내포하기 때문에 단위당 용자가격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용자금이 단순히 유통지원의 기능만 강조될 경우, 급격한 기상여건 변화로 미질이 크게 떨어져 시장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자가격은 부분적으로 가격지지 기능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용자가격을 결정할 경우 과거의 가격, 재고율뿐만 아니라 한계생산비 개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농산물 가격은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되 소득보전을 위해 용자금 정산시 예외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특정지역의 쌀 가격이 재해를 입어 용자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용자금을 정산할 때에는 용자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미국의 용자부족분 지불 제도와 유사한 수단의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우리 나라의 용자수매제도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용자가격이 지지가격으로 간주되어 보조금 감축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날 수 있는 보완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용자수매제도는 과거의 수매제도와는 달리 농가에게 가격지지를 통한 소득지원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용자수매가 실시될 경우 동일한 재원으로 수매량이 40%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자가 용자수매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물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미질 판정기 등

⁷ 임도정공장들이 수확기에 어느 정도의 선도금을 생산자에 지급하고, 생산자는 임도정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이 만족하면 판매를 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임도정업체가 크게 위축되면서 이러한 대금정산방식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의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산물처리가 일반화되어 농가의 편의가 도모되고 관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산물저장 창고의 확대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정부수매가 품질과 무관하게 동일한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저품질 생산을 장려하게 된 부작용을 감안하여 용자수매제도하에서는 정부도 하나의 시장참여자로서 공공비축미를 시장가격으로 매입하여 관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군·관수용도 실수요자가 시장에서 매입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용자수매제도가 착오없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유통지원용자제도를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가가 시장가격을 참고로 담보한 농산물을 판매하려 하였으나 실제로 팔리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담보 농산물의 판매를 책임지는 대행 기관이 있는지 또는 농가가 판매를 희망하였으나 판매되지 않은 물량의 처리는 어떻게 하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어떤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창고업자가 유통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담보 물량을 판매 후 용자금을 상환할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 담보 물량이 이동되는 시기, 용자금 상환시기, 거래대금이 정산되는 시기 등 시차 발생시 자금의 흐름 및 정산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수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용자수매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로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용자금이 지불되고 유통업체가 담보한 쌀을 보관하기 때문에 용자수매제도에 참여하는 유통업체의 자격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창고업자들의 자금

능력, 신용도 등 자격조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면화를 제외하고는 용자금 상환시 보관료를 농가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용자수매제가 도입될 경우 생산자가 판매를 위탁한 쌀을 판매할 때까지 발생하는 보관료, 상하차료 등 각종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997년도의 경우 정부양곡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관료로 약 429억원, 운반료 61억원, 상하차료 125억원 등이 지출되었다. 위탁물량에 대한 보관료 등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적정량을 시장에서 구입하게 되면 정부양곡 관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으나 일부의 비용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유통 활성화 명분으로 일부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되 보관료 등 각종 서비스 가격은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도록 검토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12. 「곡물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대응정책」.
- 농업협동조합전문대학. 1997. 11. 「미국유통의 시장기능 활성화와 농협의 쌀 유통전략 연구」.
- USDA. 1997. 10 “Production Flexibility Contracts and Marketing Assistance Loans,”
- _____. 1998. “Nonrecourse Marketing Assistance Loans and Loan Deficiency Payments,”
- _____. 1996. “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of 1996,”
- USDA ERS. 1997. “Provisions of the 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of 1996,”
- USDA ERS. 1997. “The 1996 U.S. Farm Act increases Market Orientation.”

농촌경제

제22권 제2호
(통권 85호)

인쇄일 1999. 7. 21

발행일 1999. 7. 24

발행인 강 정 일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3299-4000)

11310 - 71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정기간행물 등록 서울 바00527(1978. 5. 30)

인쇄인 권 태 식

인쇄소 (주)범신사(720-9787)

■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KOREA RURAL ECONOMIC REVIEW

VOL. 22 NO.2

SUMMER 1999

ARTICLE

Optimum Application of Fertilizer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Policy Direction Kwon Tae-Jin, Kim Yean-Jung, Oh Se-Ilk

Beef Cattle Price Determination in Japan Lee Chul-Hyun

RESEARCH NOTE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 The Trend of International Discussion

in Relation to the Next Round of WTO Negotiations Lee JaeOk

Factors Affecting Rice Production Cost by Items and Direction

for the Cost Saving Park Moon-Ho

Improving the Post-Management of Agricultural Machinery Kang Chang-Yong

Trends of Food Balances and Prospects for Grains Production

in APEC Countries Eor Myong-Keun, Choi Sei-Kyun

An Analysis of Agricultural Investment Environment in China :

Legal and Institutional Approach Chung Chung-Gil

RESEARCH ISSUE

Development of Policy Evaluation Matrix and Prospects Yoon Ho-Seop

Marketing Assistance Loans in the U.S. and its Implications Park Dong-Gyu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4-102 HOEGI-DONG, DONGDAEMUN-KU, SEOUL 130-710, KOREA